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5. 1. 7 선고 2024가단1150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유한회사

피고B

변론 종결2024. 12. 3.

판결 선고2025. 1. 7.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24. 8.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C에게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2024. 8. 26. 접수 제60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2021가소1194229), 위 법원은 2021. 8. 25. C로 하여금 원고에게 3,933,285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24. 3. 12.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E, 자녀들인 피고 및 F, C, G는 2024. 3. 1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른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던 중 망인의 채권자의 대위등기신청에 따라 2024. 8. 13. 이 사건 각 부동산은 E에게 3/11 지분, 피고 및 F, C, G에게 각 2/11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후 C는 2024.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위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는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적법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아가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동래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C는 2023. 6. 8. 광주시 H건물, I호를 22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위 부동산에는 2023. 6. 23. 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의 주택임차권 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C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에 대한 양수금채무뿐만 아니라 J 주식회사, 근로복지공단, K 주식회사에 대하여 합계 50,796,118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 외에는 적극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망인은 생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경북 영덕군 L답 2,206㎡(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9. 7. 26. 매매대금 82,775,000원에 이를 매도하였다.

② 망인은 위 매도대금을 망인 명의 농협계좌에 보관하여 두고 있다가 2019. 12. 27. 현금 10,000,000원을 인출하였고, 같은 날 C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③ 이후 망인은 2020. 6. 11. G에게 20,000,000원을, 2020. 7. 7. E에게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망인은 이 사건 농지의 처분대금을 C, G, E에게 각 20,000,000원씩 송금하였고, C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한 날에 현금 10,000,000원을 별도로 인출하기도 하였던 점, 망인의 상속인들이 2024. 3. 1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농지의 처분대금은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 4명이 생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나아가 망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위 농지 외에 특별한 적극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농지의 처분대금을 지급한 시기가 인접하여 있고,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분배된 점 등을 고려하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농지의 처분대금을 분배받은 것은 상속분을 미리 지급받아 특별수익을 얻은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③ 한편 망인에 대한 상속이 개시된 2024년도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은 37,900,000원으로 공시되어 있고, 부동산의 실제가치가 위 공시가액을 초과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위 가액을 기준으로 C가 증여받은 금전에 물가변동률¹⁾을 반영하지 않은 채 C의 구체적 상속분의 가액을 산정하더라도 1,436,363원{= 21,436,363원(= 상속재산 37,900,000원 + 특별수익재산 총액 80,000,000원) × 법정상속분 2/11 - C의 특별수익 20,000,000원, 계산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이 된다.

④ 이러한 C의 대략적인 상속분 가액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가 C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C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증여 역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므로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서동민

별지

1) 유류분반환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등 참조).